

대구광역시 서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

1. 심사과정

- 발의일자: 2023. 9. 27.
- 발 의 자: 백일권 의원 외 2명
- 회부일자: 2023. 10. 4.(의안번호 제489호)
- 상정일자: 제24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
제1차 사회도시위원회(2023. 10. 16. 상정 · 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: 백일권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15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·고시된 지역의 건축 및 형질변경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기본방향, 용어의 정의(안 제1조~제3조)
-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(안 제4조)
-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및 표지판 설치(안 제5조~제6조)
- 유형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의 건축, 형질변경 제한(안 제7조~제12조)
- 직접·간접적인 피해 지점의 판단 절차(안 제13조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이진호)

-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구청장이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12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한 경우,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의

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데, 본 조례안은 그러한 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, 검토 결과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-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, 안 제2조에서 제시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재해 예방대책의 기본방향에 근거하여 안 제4조에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, 형질변경 등의 행위 제한에 적용할 지구 관리 일반원칙을 명시하였고, 이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에 걸쳐서 지구의 하위 유형별로 각각의 예외 사항을 포함하여 열거하였으며,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과 관련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지형도면 고시, 표지판 설치에 대해서는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그 세부적인 방법을 규정하였음.
- 우리구의 경우 이미 금년 5월까지 두 곳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·고시한 바 있으므로 해당 지구 내 행위 제한의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이러한 조례의 제정은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음. 다만,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의 예외 사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소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관 부서에서는 본 조례안과 관련 지침을 숙지하여 향후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심사결과: 원안가결